" 2020년 새해맞이 기관장 특별강의 "

우리나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현황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목차

우리나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현황

1. 청렴이란 무엇인가

- 부패와 청렴의 정의
- 청렴역량 4요소
- 청렴의 중요성 :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2. 한국의 청렴수준

- 제도적 변천
-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도 조사

3. 반부패 관련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직자윤리법
- 국가공무원법
- 청탁금지법

CHAPTER

1

청렴이란 무엇인가?

- 부패와 청렴의 **정의**
- 청렴**역량 4요소**
- **청렴의 중요성** :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부패와 청렴의 **정의**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부패의 어원

COR 함께 + RUPT 파멸하다 = CORRUPTION 부패

썩을 **부** 무너질 **패**

腐 敗 " 썩어서 무너지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와 청렴의 **정의**

청렴이란 무엇인가?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

청렴의 어원

INTEGRITY
청렴

맑을 **청** 清

청렴할 **렴** 廉

"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 "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개념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

청렴역량 4요소

1 청렴 **민감성**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능력을 말하며 각각의 행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역량**

2 청렴 **판단력**

문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위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 정의로운지 등을 **판단하는 능력**

콜버그의 도덕성발달 단계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1단계 : 타율적 도덕 단계 2단계 : 개인주의 단계	1~2 단계 전인습적 단계	" 벌이 무서워서, 대가를 기대해서 "
3단계 : 대인간 기대 단계 4단계 : 사회시스템 도덕 단계	3~4 단계 인습적 단계	" 인정받기 위해서, 법은 지켜야 되니까 "
5단계 : 개인의 권리 및 사회계약 단계 6단계 : 보편적 윤리적 원칙단계	5~6 단계 후 인습적 단계	" 개인의 권리도 중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

3 청렴 **동기화**

재산, 명예 등 매력적인 가치들 중에서 **청렴에 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로 즐거운 기억, 최근의 성공경험, 무엇인가를 받은 행복한 기분을 누린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관대하며 협동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경향

4 청렴 **수행력**

도덕적 행동을 함에 있어 행동의 순서를 이해하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치고,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능력**

청렴의 **중요성** _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청렴과 국가브랜드·경제성장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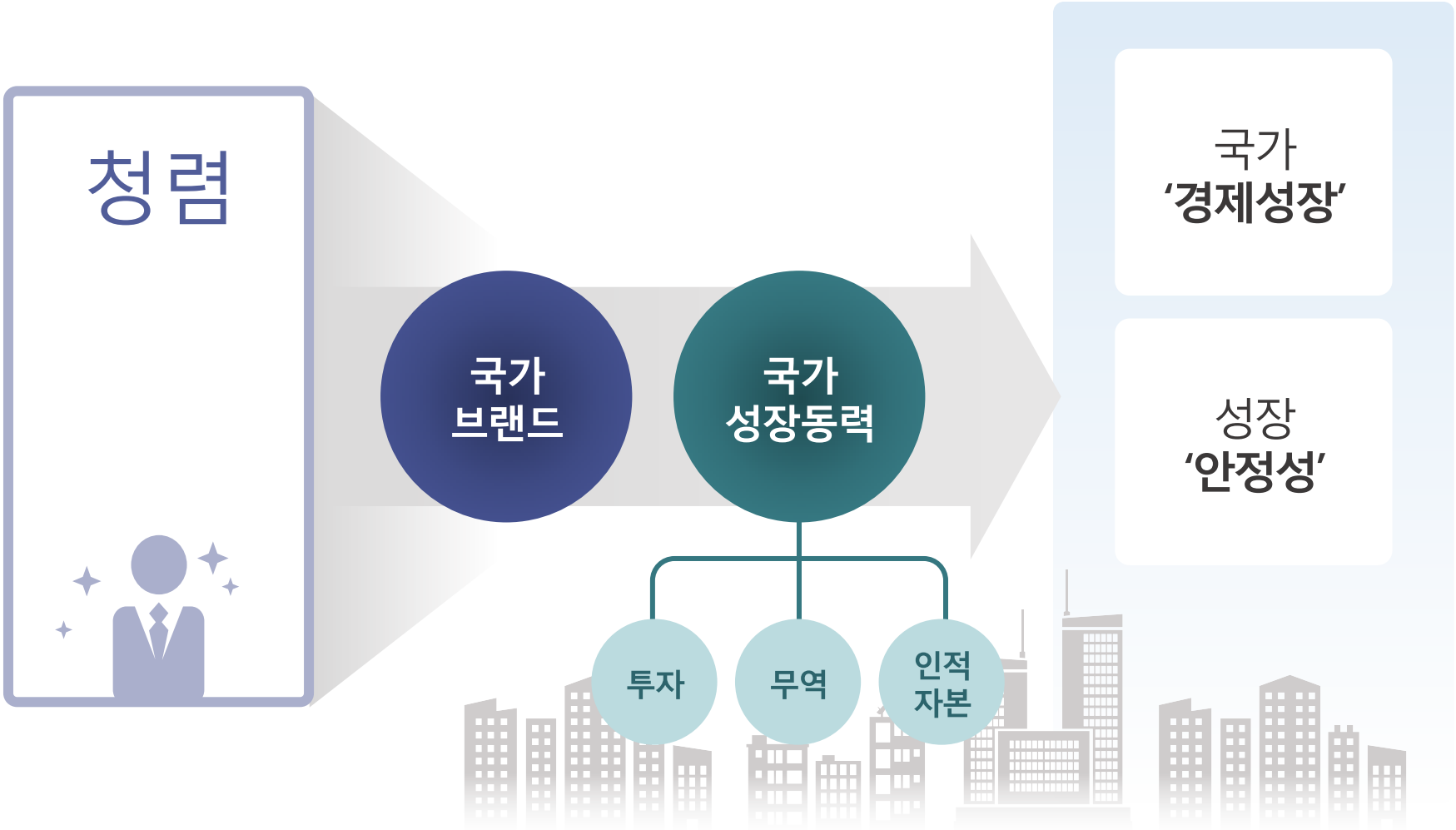

청렴의 **중요성** _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

- ✓ 정경유착 및 특혜, 불공정 경쟁의 경우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기술개발 및 기업활동이 위축**
- ✓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 묵인의 경우 **공공부문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낭비와 수입이 감소
- ✓ 국가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된 경우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의 감소** 및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발생

청렴은 신뢰, 윤리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지표로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역할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국부의 81%가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
- ✓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비용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
- ✓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 국부를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청렴문화의 확산과 청렴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

CHAPTER

2

한국의 **청렴수준**

- 제도적 **변천**
-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도 조사**

제도적 변천

국제 기구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우리나라 대표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에 대한 제도적 변천

	반부패 조직	반부패 제도
제1공화국 이승만 행정부 1948~1960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제2공화국 장면 행정부 1960~1961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정
제3·4공화국 박정희 행정부 1961~1979	감사원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서정쇄신운동
제5공화국 전두환 행정부 1980~1988	사회정화위원회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운영
제6공화국 1기 노태우 행정부 1988~1993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운영
제6공화국 2기 김영삼 행정부 1993~1998	부패방지대책위원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공직선거법 제정 및 운영
제6공화국 3기 김대중 행정부 1998~2003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법과 자금세방지법 제정, 공무원행동강령 신설
제6공화국 4기 노무현 행정부 2003~2008	국가청렴위원회	주식백지신탁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공화국 5기 이명박 행정부 2008~2013	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등 통합) 설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제6공화국 6기 박근혜 행정부 2013~2017		청탁금지법 시행
제6공화국 7기 문재인 행정부 2017~현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인식지수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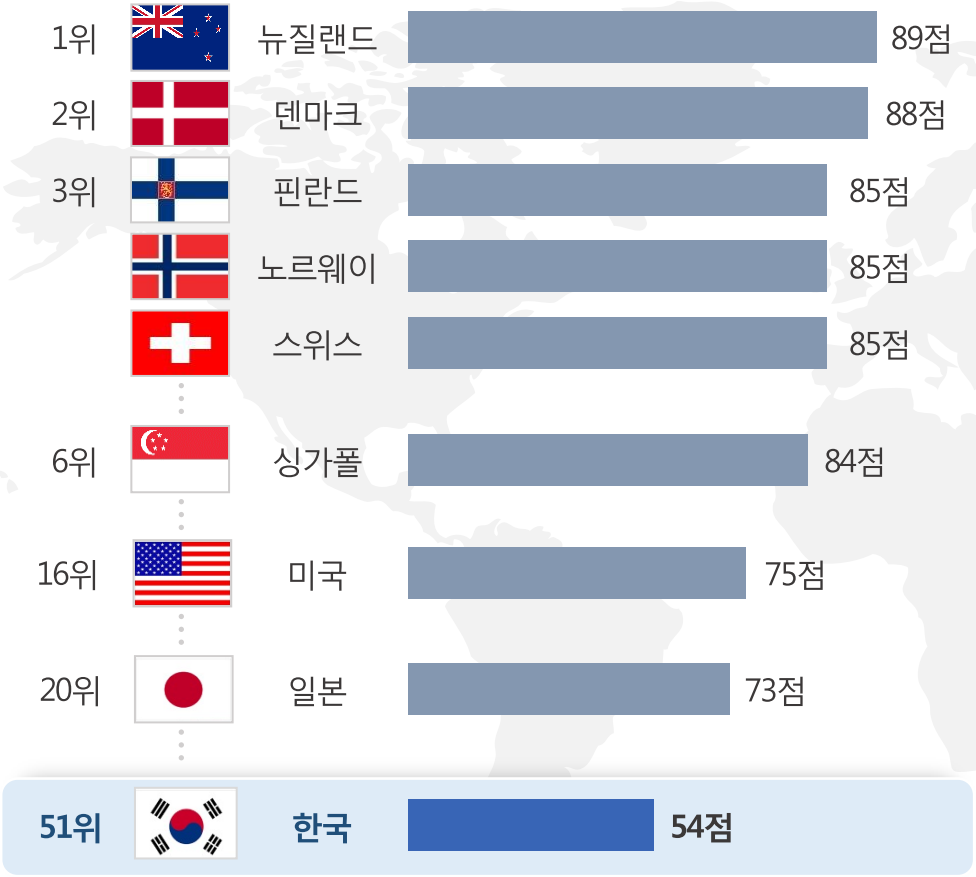

국정농단사건, 법조·방산비리 등 혼란스러운 사회상 반영.

하지만, 반부패 개혁 의지가 긍정적 영향

"부패인식지수 1계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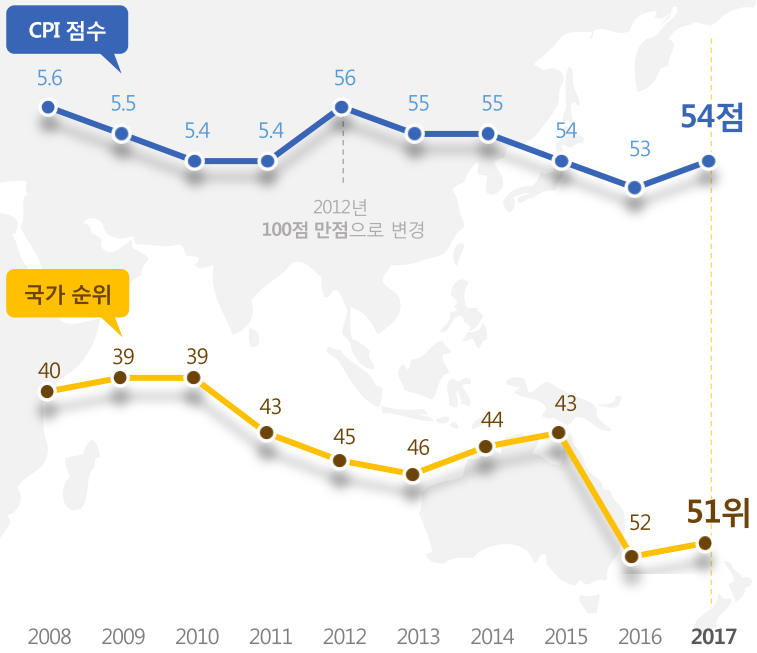

부패인식도 조사

사회전반의 부패 수준 인식

- ✓ **청렴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이 5.6%인 반면, 공무원은 58.1%로 **국민과 공무원간 인식 괴리**
- ✓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이 66.8%로 가장 높고**, 전문가58.9%, 기업인48.2%, 외국인28.3%, 공무원18.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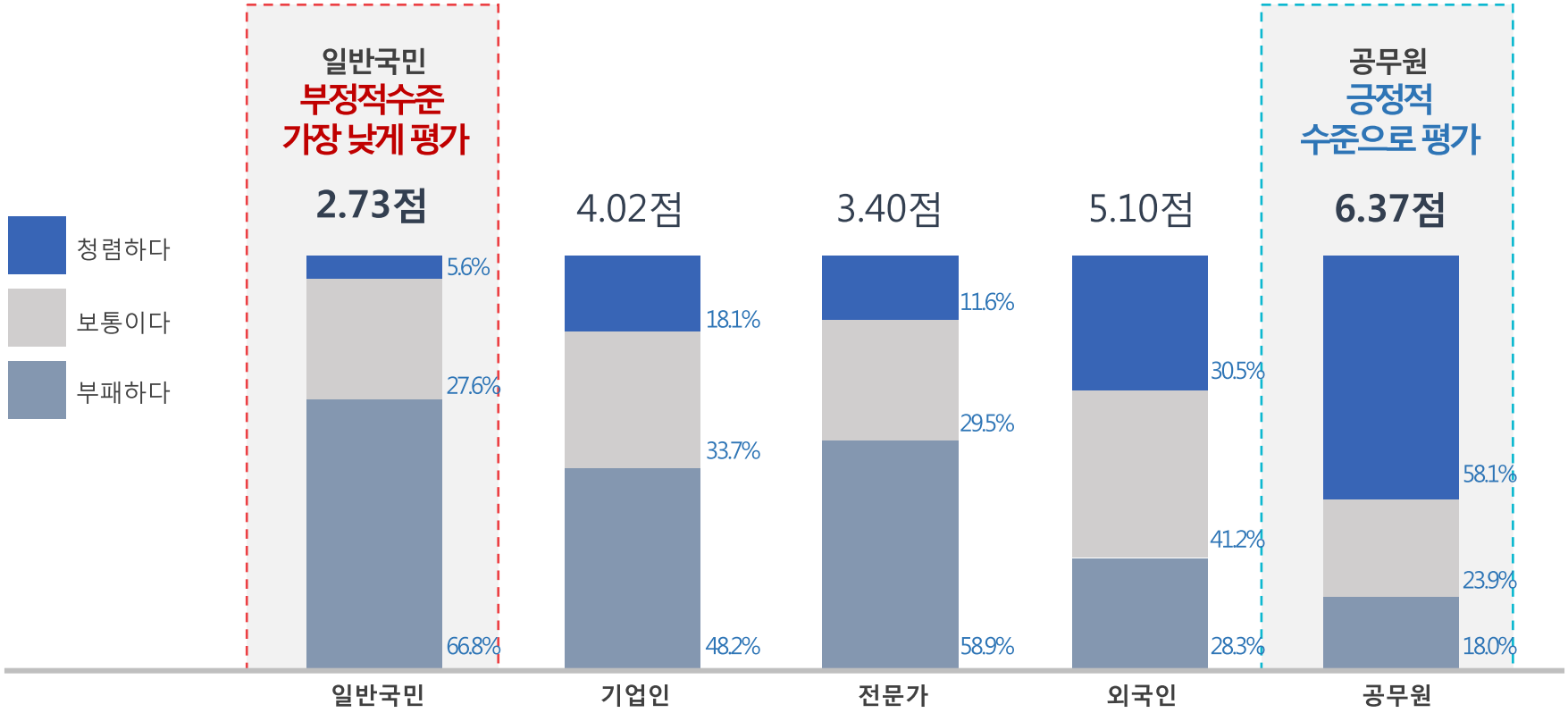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부패인식도 조사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가 가장 높음**
- ✓ 일반국민59.5%, 기업인70.6%, 공무원58.3% 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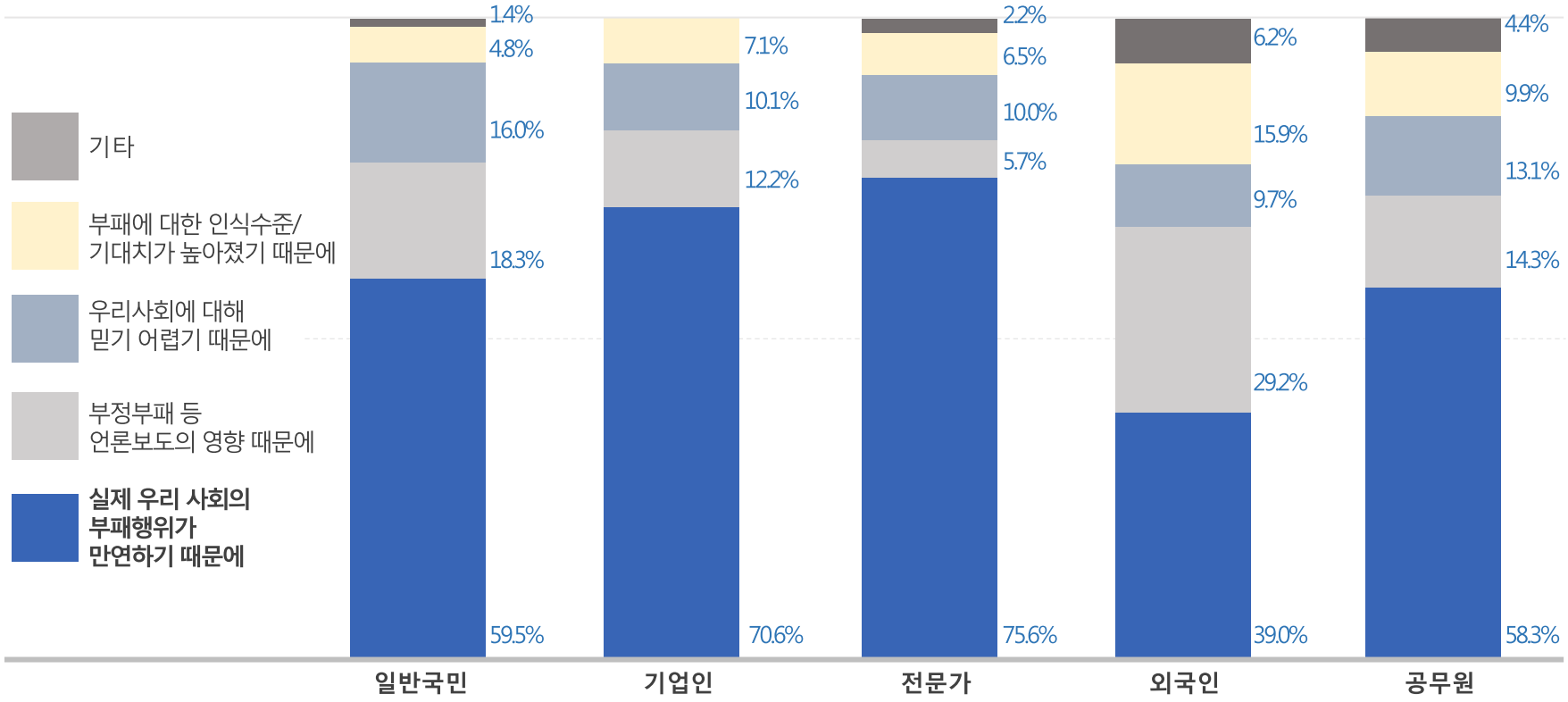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부패인식도 조사

우리 사회 부패발생 원인

- ✓ 부패발생 원인으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 기업인23.7%, 외국인21.3%의 경우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 응답
  일반국민23.0%, 공무원 19.7%의 경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른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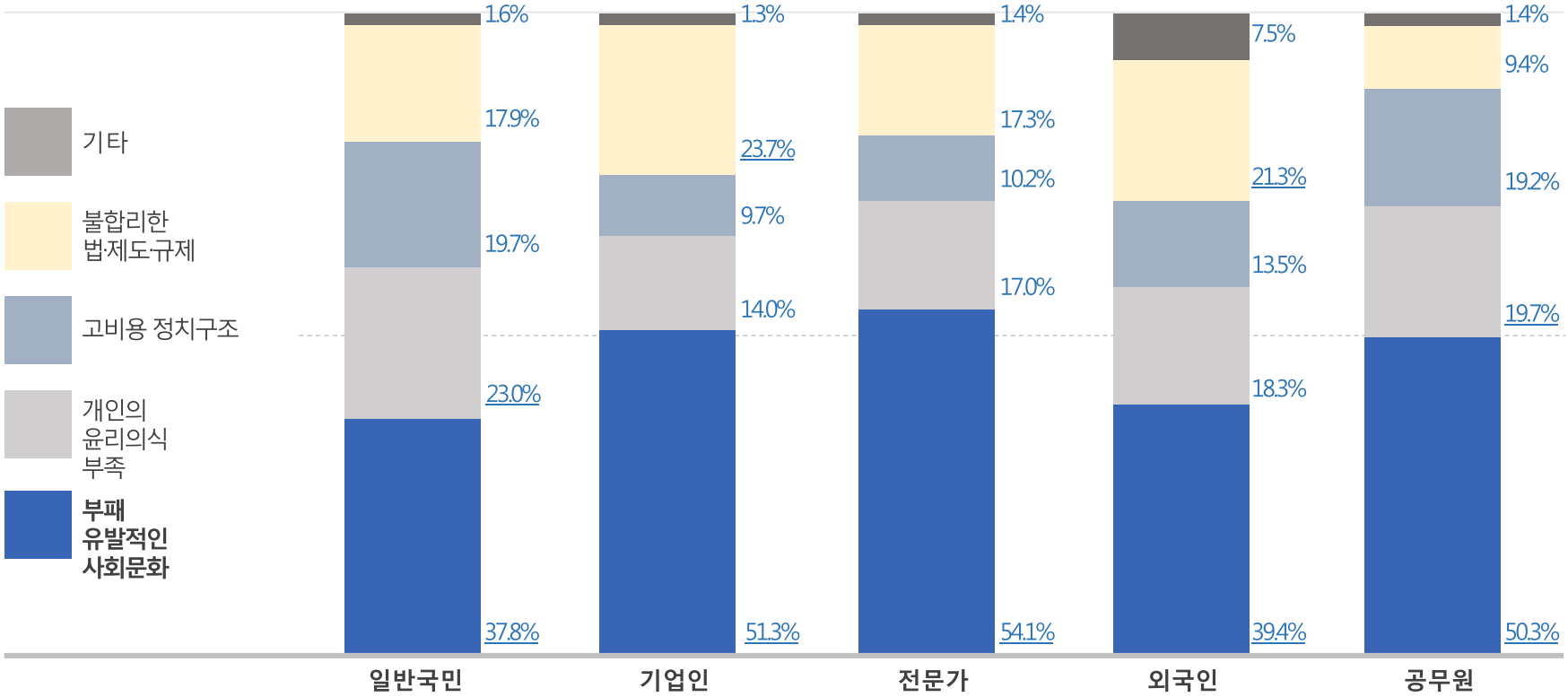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부패인식도 조사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인식

- ✓ **청렴하다는 응답** 비율은 공무원이 67.9%로 기업인 9.2%보다 **7배 이상 높음**
- ✓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은 **기업인이 52.2%로 가장 높고**, 일반국민52.0%, 전문가45.4%, 외국인26.6%, 공무원8.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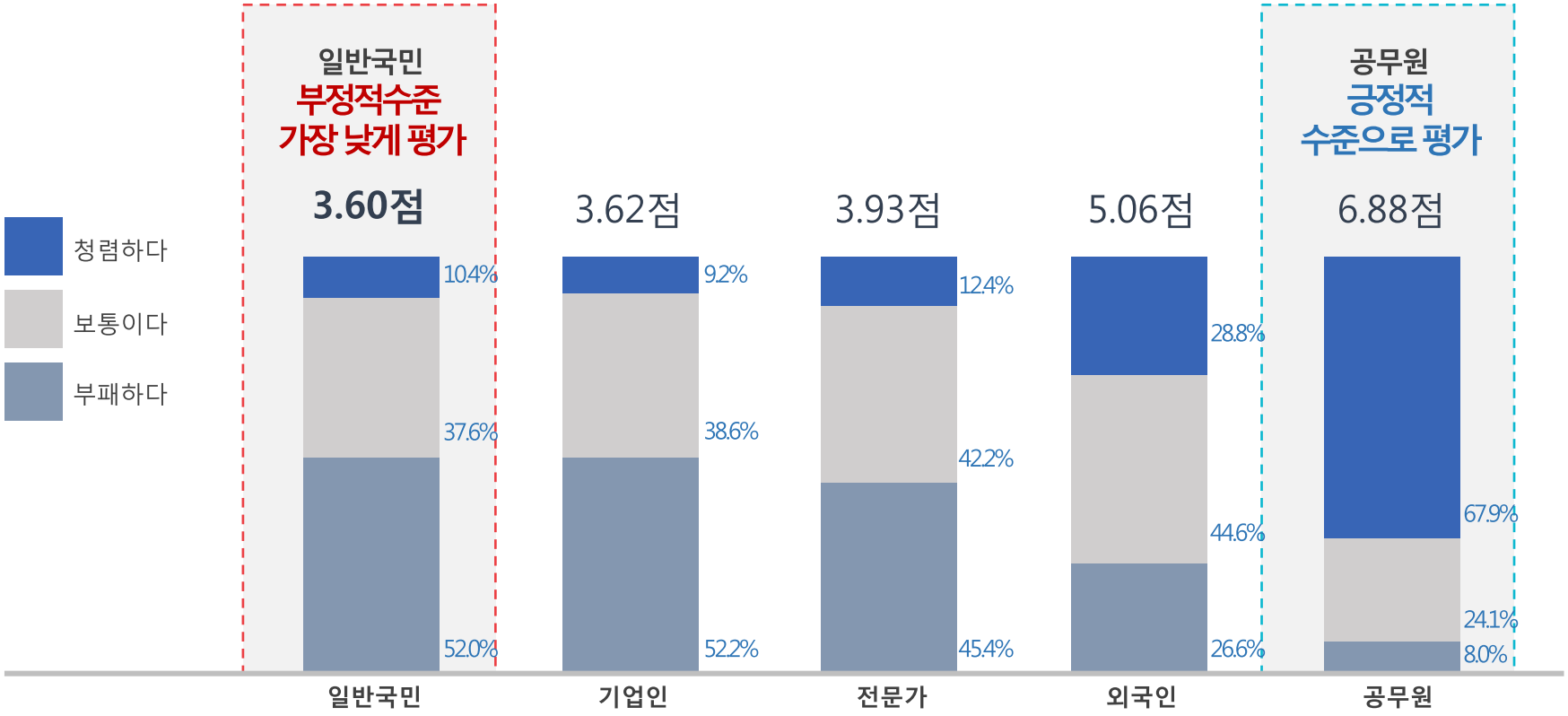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부패인식도 조사

우리사회 부패수준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과 관련하여 **모든 조사대상에서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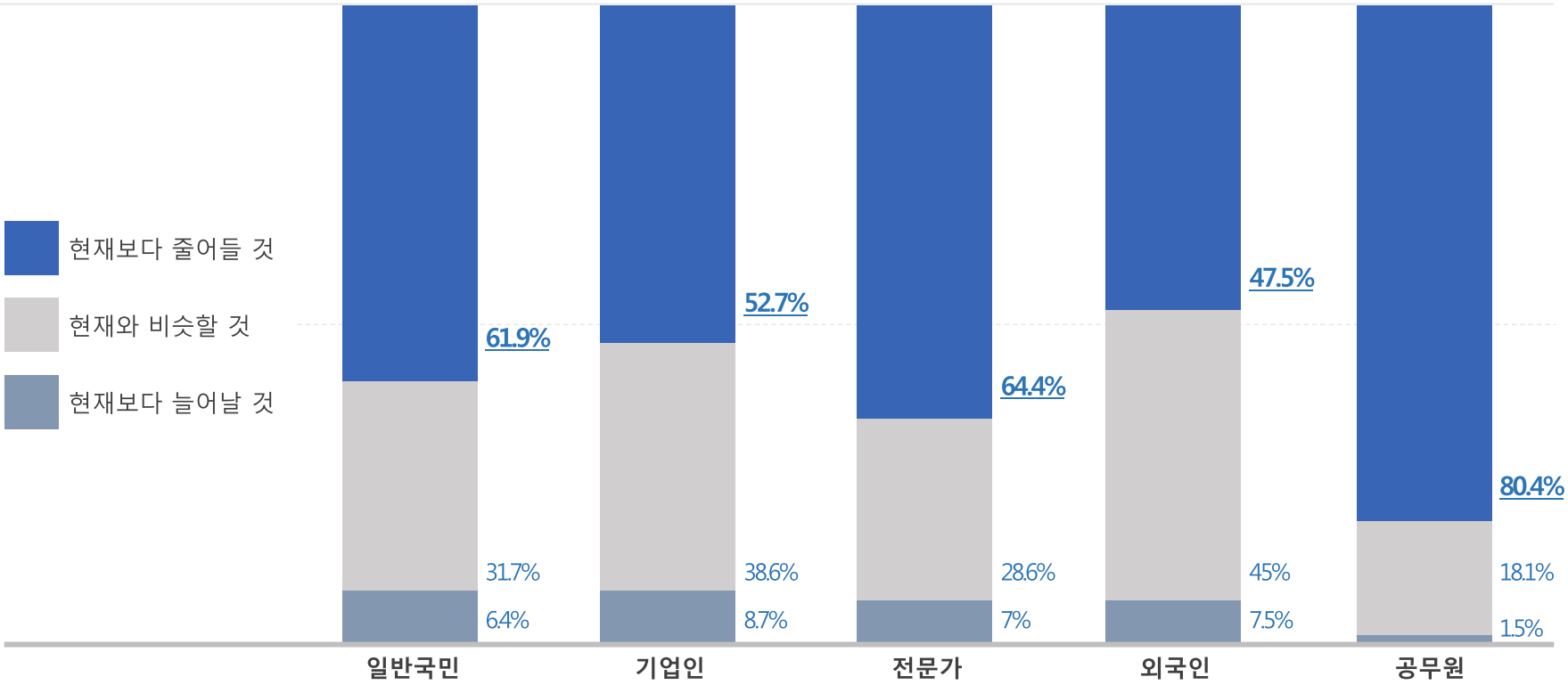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부패인식도 조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 부패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고위직 부패감사' '부패유발 문화 개선' 순으로 응답
-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지적. 반면 공무원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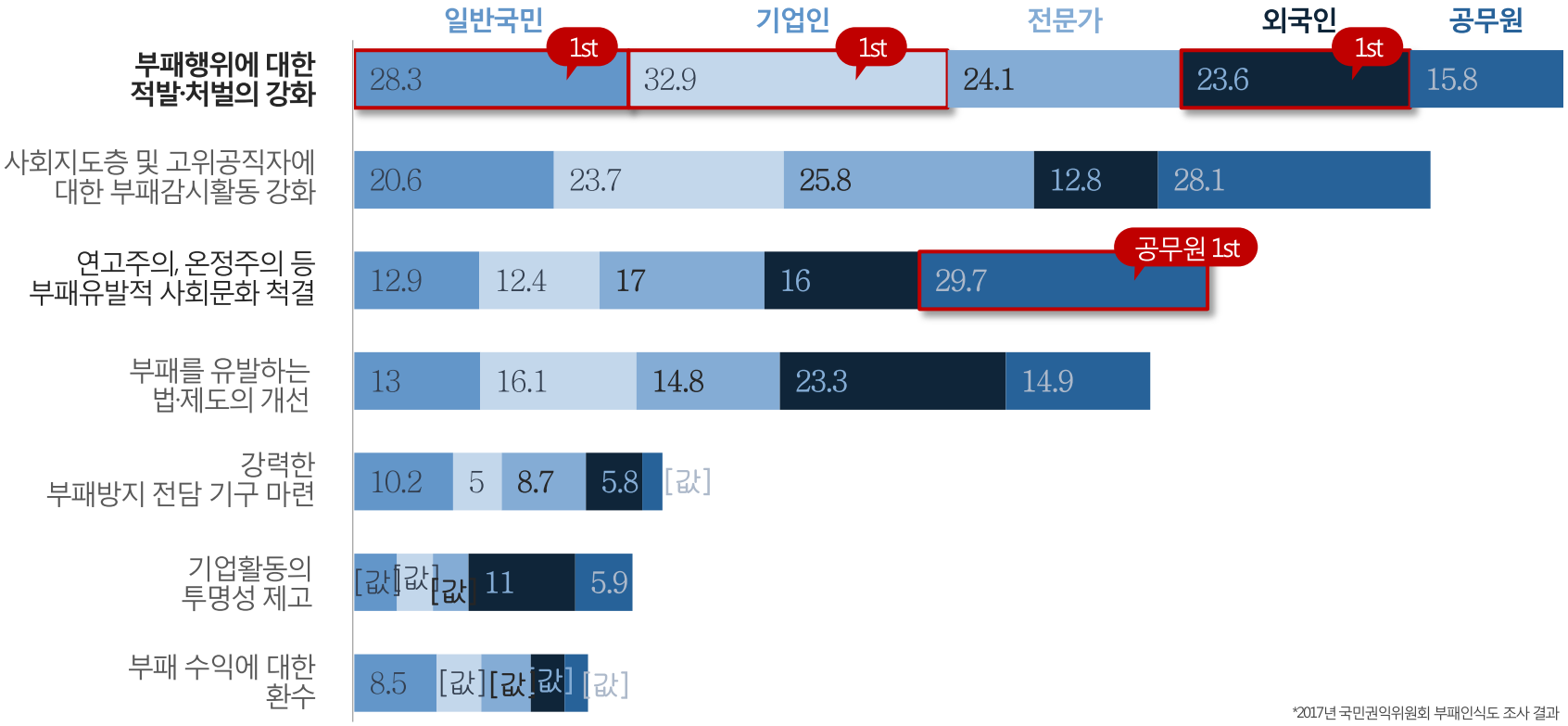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CHAPTER

3

관련법

반부패 관련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직자윤리법
- **국가공무원법**
- 청탁금지법

반부패관련법 _ 부패방지 관련 법제 개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의 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과태료 및 형벌 등 벌칙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징계 및 벌칙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종, 견책) 및 그 효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취지로 하는 '형법상 뇌물죄'와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배경 및 의의

부패방지법 제정배경

권력형 부패의 발생

- 전임 대통령들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부정축재 발생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

- 참여자치시민연대, 부패통제 입법청원(1996년 11월)
- 부패방지 입법 시민연대,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입법 청원(2000년)

국제환경의 변화

-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
-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자금운용에 부패발견시 제재방안 마련
- 유럽연합(EU), 유럽반부패기구 신설(1999년)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 통과

부패방지법 제정연혁

도입

- ✓ **2001.07.24 부패방지법 제정** (구 부패방지위원회)
- ✓ **2008.0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국민권익위원회 출범)

강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개정**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비위면직자취업제한 강화, 부패신고자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 (`16.03 29 개정 `16.09.30 시행)
  - 사학부패까지 신고·보호범위 확대 (`17.04.18 개정·시행)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인적사항 공개·보도시 징계요구권 신설 (`17.10.31 개정, `18.02.01 시행)

의의 및 주요내용

- ✓ **최초 부패방지를 위한 단일입법**
- ✓ **국민을 부패척결의 주체로 전환**
- ✓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도입**

부패행위란 무엇인가?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1(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나목)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

신고자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신고방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기재**
- ✓ **부패행위 증거** (증거제시 의무)

구술신고 예외 인정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인정

기타 신고 방법

- ✓ 방문
- ✓ 우편
- ✓ 팩스 **044-200-7972**
- ✓ 출장
- ✓ 부패공익신고앱,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일반 국민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 수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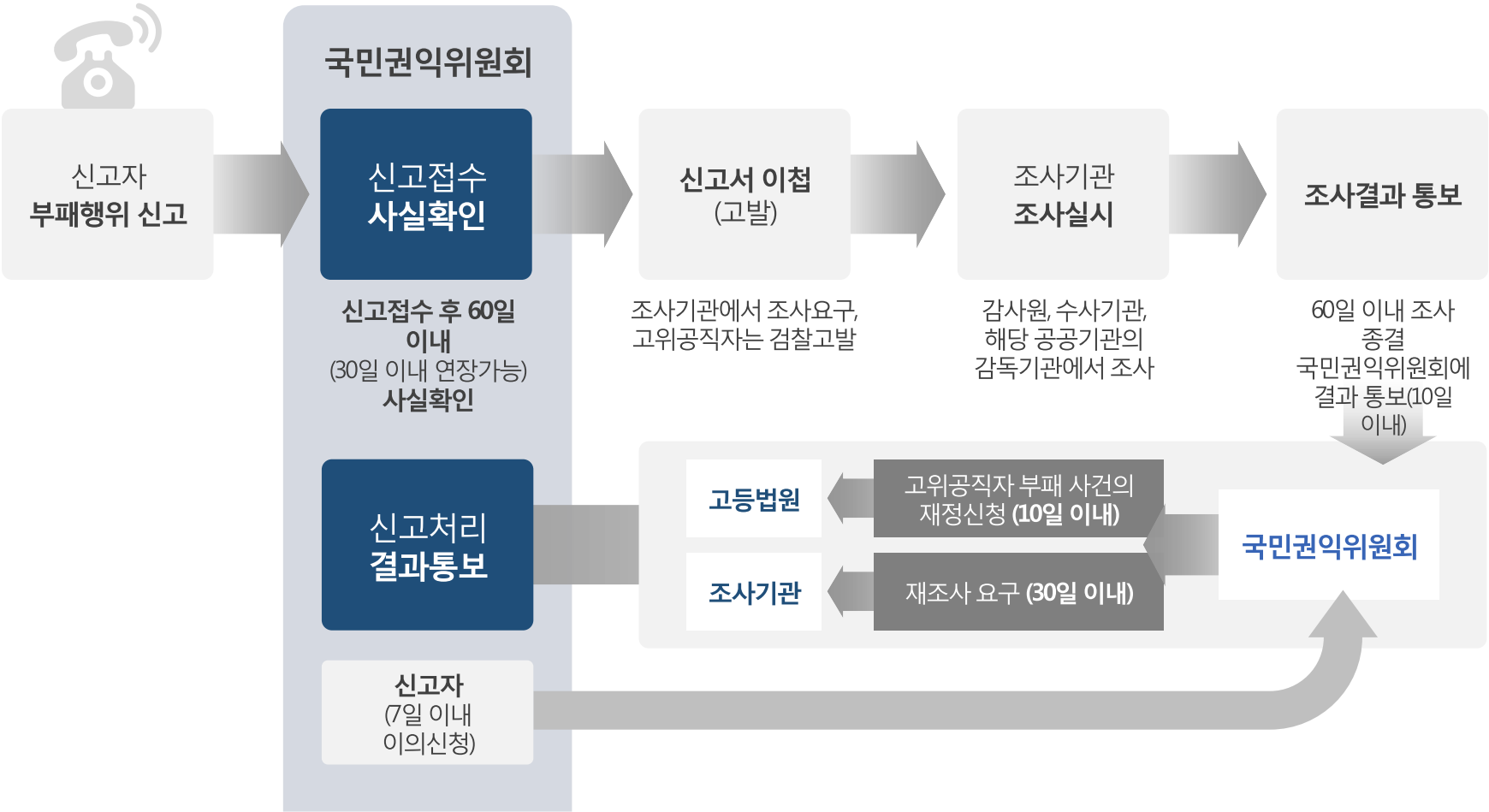

신고 효력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확인 •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 불이익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체계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처리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 보장

신고준비단계에서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보호하는 신고인 경우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

신변보호 요구

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구

그 밖의 보호조치

신고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
※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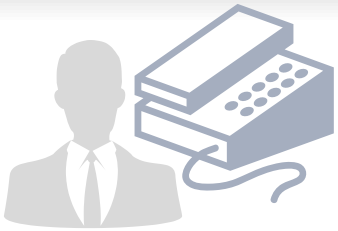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자 포상금 제도

부패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요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포상금 지급 기준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5억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 해당금액
※ 2015.10.20. 신고부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목적 및 주요내용

목적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공무수행 시
공정성을 확보

공직자 윤리를 확립

주요내용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

규정	주요내용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4급 이상 공무원 빛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제2장의 2 주식백지신탁제도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시신탁계약체결 후 등록기관에 반드시 신고
제3장 선물신고제도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인도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영리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부터 가입한 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을 제한

공직자윤리법

행위제한과 제한점

공직자윤리법상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

공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는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직원들에게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및 알선행위 금지'의 규정**을 두고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8조 5, 제22조 제17호, 제23조에서는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 기관인 경우는 시정권고

공직윤리법의 제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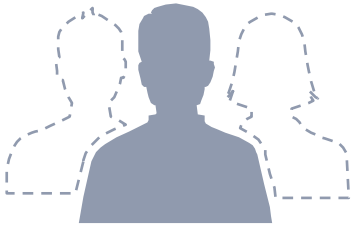

공직윤리법에서 그 적용대상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공직윤리제도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 제한"**

**공공기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도입
2001.7.24
부패방지법 제정

개정
2016.3.29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14145호)

2016.9.30
시행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비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주무 부처 근거법령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 (공무원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직급, 직위와 관계없이) •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간	• 퇴직일(선고일)로부터 5년간
벌칙 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 자료제출 거부 (2천만원 이하) • 해임요구 거부 (1천만원 이하)	• 자료제출 거부 (5백만원 이하) • 해임요구 거부 (1천만원 이하)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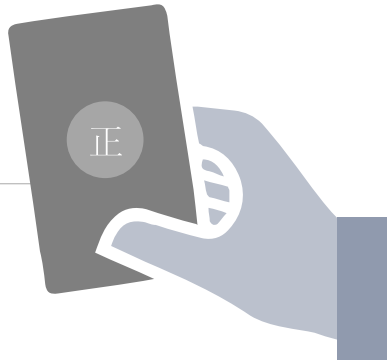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 수수시 **공직자 이익으로 간주**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청탁거절로 간주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

선의의 공직자·공적업무 종사자등 보호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2011~2012
다양한 분야·계층 의견 수렴

- 공개 토론회
- 대국민 설명회
- 전문 연구기관 연구

2012~2013
공청회 및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 보완

- 정부 입법절차 진행

정부안 국회 제출
2013. 8. 5.

2014~2015
국회 심의 및 법안 공포

- 정무위원회 의결
- 법제사법 위원회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2015. 3. 3.

법안 공포
2015. 3. 27

2016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입법적 산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공직자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의 금지 핵심내용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의
법령 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공정하고 청렴한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의미**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고 규정**

공직자 "등"이란 한 글자에 민간영역까지 포함하게 되어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었고 부정청탁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공직자등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사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

+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

- 직무 참여일시정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 *** 직무수행**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유형과 제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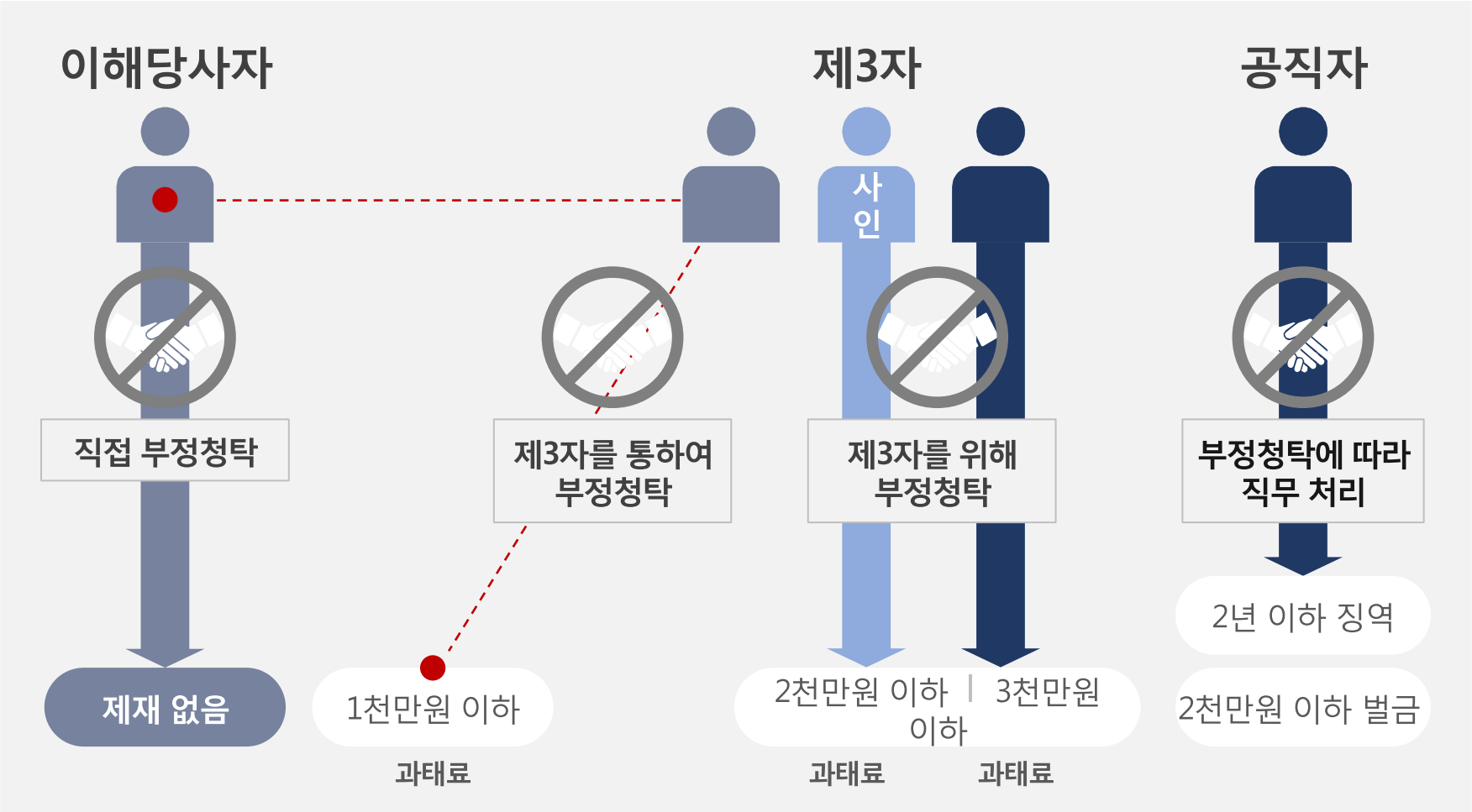

***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탁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재대상에서는 제외, 또한 청원이나 민원의 방식으로 청탁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핵심내용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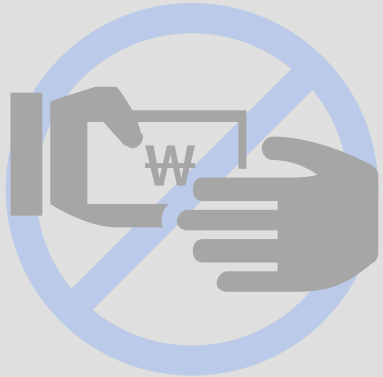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수수행위 금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처벌

청탁금지법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 직무 참여일시정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와 제재 유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가족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알고도 반환,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수수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직무관련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대가관계 불문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불문

청렴 한

내일 을

소망 합니다.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